



제 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도박문제 예방·치유사업 수행기관 인증제도 도입 등 〉
■ 김교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853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전문강사 활용 등	3
2. 도박문제 예방·치유사업 수행기관 인증제도 도입	10
※ 참고자료	17
1.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	17
2. 도박문제 예방강사 운영 체계 및 현황	1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교홍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6. 3. 30.
3. 회 부 일: 2026. 3.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의 확산과 디지털 환경 변화로 스마트폰, SNS,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청소년의 도박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사행성이 있는 게임 등을 매개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 연령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음. 학업 중단, 채무 발생, 학교폭력 및 범죄 연루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초·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개정됐지만, 예방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과 대상별 교육 콘텐츠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 운영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임.

아울러 도박문제 예방교육, 상담 및 치유 사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증가하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Ⅲ. 검토의견

1.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전문강사 활용 등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①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인정한 기관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양성한 도박문제 예방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에 금융·경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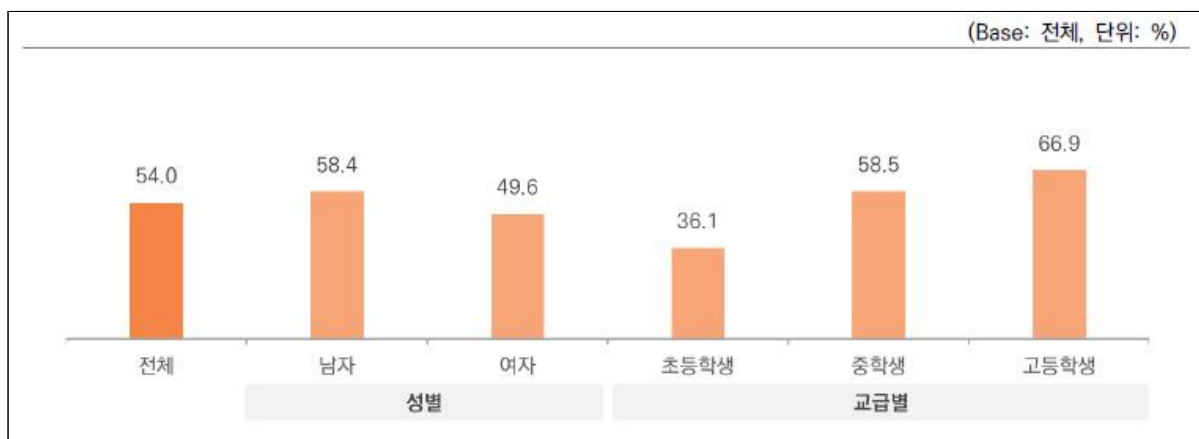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092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 ④ (생략)	법률 제21092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⑤ 제4항에 따른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장은 위원회에서 인정한 기관 및 예방치유원에서 양성한 도박문제 예방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u>
<u><신설></u>	<u>⑥ 제4항에 따른 예방교육에는 도박의 위험성과 중독 예방에 관한 내용 외에 건전한 금융·경제 이해를 높</u>

<신 설>	이기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예 방교육의 내용,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다. 검토의견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과 디지털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음.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¹⁾에 따르면, 54%의 청소년이 도박 홍보물에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배너·팝업 광고, SNS 게시물 등 온라인에 기반한 노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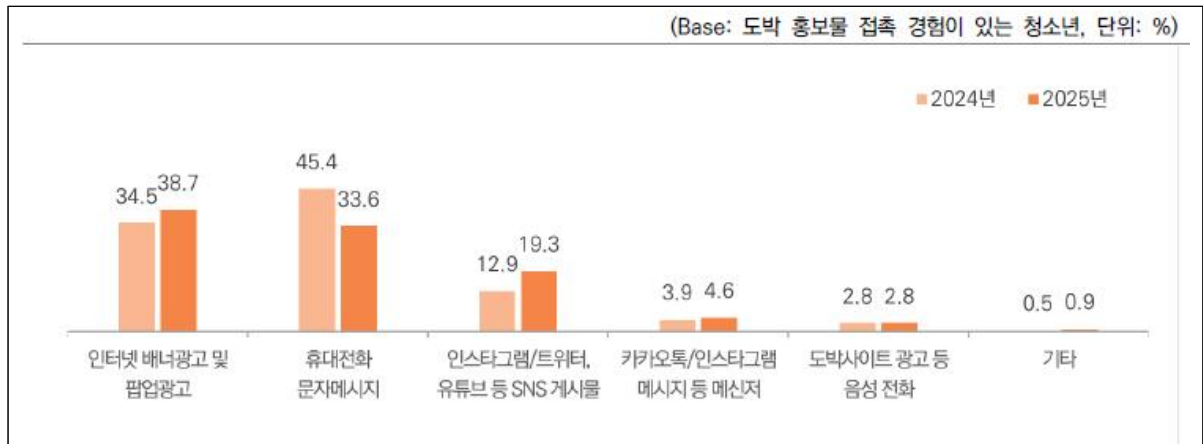
[도박 홍보물 접촉 경험]



출처: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p. 51

1)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13,481명 대상 실시, 주요 결과는 [참고자료 1] 참조

[도박 홍보물 접촉 시 주 접촉 매체]



출처: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p.37

또한, 처음 도박을 경험한 평균 연령이 2024년 12.9세, 2025년 12.5세로 낮아지고 있으며, 10대의 도박중독 치유재활 서비스 이용 비중은 2021년 6.2%에서 2025년 24.3%까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처음 도박 경험 평균 연령]

연 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평균 연령	미시행	11.3세	미시행	12.9세	12.5세

* 2024년 국가승인통계 전환 및 조사 설계 변경에 따라, 유사 사행행위(인형뽑기 등)가 포함된 2022년 수치는 2024년 이후 결과와 직접 비교는 어려움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연도별-연령별 도박중독 치유재활 서비스 이용인원*]

(단위: 명, %)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무응답	합 계
2021	인원	1,242	6,588	6,587	3,232	903	427	94	809	19,882
	비율	6.2	33.1	33.1	16.3	4.5	2.1	0.5	4.1	100.0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무응답	합 계
2022	인원	1,460	7,104	7,276	3,793	1,230	596	98	822	22,379
	비율	6.5	31.7	32.5	16.9	5.5	2.7	0.4	3.7	100
2023	인원	2,093	6,154	6,828	3,718	1,284	558	104	1,085	21,824
	비율	9.6	28.2	31.3	17	5.9	2.6	0.5	5	100
2024	인원	4,144	6,308	6,603	3,667	1,386	659	162	305	23,234
	비율	17.8	27.1	28.4	15.8	6	2.8	0.7	1.3	100
2025	인원	5,838	6,020	6,184	3,459	1,523	742	197	17	23,980
	비율	24.3	25.1	25.8	14.4	6.4	3.1	0.8	0.1	100.0

* 지역센터, 전문상담기관, 헬프라인, 네티라인 등 1회 이상 치유서비스를 받은 실인원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청소년 도박은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도박비 마련을 위한 2차 범죄로 이어지는 등 새로운 문제를 파생시키는 바, 적시에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안이라 볼 수 있음.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 2024년 12월 실시한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문제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2조 1,739억원으로 추계됨²⁾.

이에 각급 학교의 장이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2025년 11월 개정되어 2026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음³⁾.

2) 직접비용(도박 손실비용, 부채비용 등) 9,793억원, 간접비용(미래소득 감소, 부모의 생산성 감소 비용 등) 1조 1,657억원, 기회비용(도박 문제로 인한 금액을 은행 예금 등으로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회) 289억원

이에 따라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의 실시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과 교육 콘텐츠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예방교육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현재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은 예방치유원의 예방강사⁴⁾(2025년 말 기준 활용가능한 예방강사 528명) 파견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방치유원 콘텐츠를 활용한 학교 자체 교육과 경찰청 협업 학교전담경찰관 예방교육 등이 일부 운영되고 있음.

[2025년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실시 현황]

구 분	교육횟수(회)	참여인원(명)
- 예방강사 파견 등 기관 연계 교육	20,053 (79.3%)	1,008,102 (58.3%)
- 학교 자체 교육	1,409 (5.6%)	149,617 (8.6%)
- 경찰청(학교전담경찰관) 협업 교육	3,818 (15.1%)	572,636 (33.1%)
합 계	25,280 (100%)	1,730,355 (100%)

주: 학교 밖 예방교육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의무화 시행('26.5.12.) 이후 교육 횟수는 최소 2배, 대상 인원은 3배 이상 확대되어 전체적인 행정·교육 수요는 약 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법률 제21092호, 2025. 11. 11., 일부개정], [시행 2026. 5. 12.]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1.>

②·③ (생략)

④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11.>

4) 도박문제 예방강사 운영 체계 및 현황은 [참고자료 2] 참조

이에 개정안은 각급 학교의 장이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인정한 기관 및 예방치유원에서 양성한 도박문제 예방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에 금융·경제 교육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전문강사 활용을 통해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도박예방교육과 금융·경제 교육의 연계성을 통해 도박의 본질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이해 제고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에 금융·경제 교육 포함 의무화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금융·경제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범교과 학습으로 기운영되고 있으므로, 학교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학교의 재량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18조의4제5항은 위원회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양성한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8조의5는 위원회가 도박문제 예방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정’한 기관을 ‘인증’한 기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전문강사 활용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청

소년의 도박 접근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업 중단, 채무 발생, 범죄 연루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입장임.

다만, 청소년의 경우 도박 자체가 불법이므로 안 제18조의4제6항의 ‘도박의 중독 예방’은 ‘도박의 예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2. 도박문제 예방·치유사업 수행기관 인증제도 도입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도박문제 예방·치유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8조의5(도박문제 예방·치유사업 수행기관의 인증) ① 위원회는 도박문제 예방사업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박문제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u> <u>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 <u>1. 전문 인력 확보 및 운영 체계</u> <u>2. 도박문제 예방·치유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및 사업 운영 기반의 적정성</u> <u>3. 기관의 윤리성 및 책임성</u> <u>4. 사업 수행 성과 및 관리 체계</u> <u>5. 그 밖에 도박문제 예방·치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u> <u>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u>

	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하여 개선 권고, 인증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인증 기준, 평가 방법, 재인증 절차 및 인증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다. 검토의견

예방치유원⁵⁾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①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
3. 예방·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5.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재활 사업 지원
6. 예방·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7.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정부 또는 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

② 예방치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예방치유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예방치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정부와 위원회는 예방치유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⑥ 예방치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예방치유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⑧ 예방치유원이 아닌 자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

문제의 예방·치유·재활 등의 사업과 활동을 위해 2013년 8월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임.

예방치유원은 도박중독 치유·재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 15개의 지역센터(직영 2개소, 위탁 13개소)를 두고 있으며, 지역센터 이용이 어려운 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치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 46개의 전문상담기관을 선정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025년 예방치유원 지역센터 및 전문상담기관 운영 현황]

지역	상담기관 현황		
	지역센터	전문상담기관	계
서울	1개소	9개소	10개소
부산	1개소	2개소	3개소
대구	1개소	1개소	2개소
인천	1개소	2개소	3개소
광주	1개소	1개소	2개소
대전	1개소	1개소	2개소
울산	-	2개소	2개소
세종	-	1개소	1개소
경기	2개소	14개소	16개소
강원	2개소	3개소	5개소
충북	1개소	1개소	2개소
충남	-	3개소	3개소
전북	1개소	2개소	3개소
전남	-	1개소	1개소
경북	1개소	2개소	3개소
경남	1개소	1개소	2개소
제주	1개소	-	1개소
합계	15개소	46개소	61개소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니 된다.

⑨ 예방치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도박 문제 예방·치유사업은 예방치유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의 실시 의무화 및 도박 문제 치유·상담 서비스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도박문제 치유 및 상담서비스 이용 현황]

구분	치유서비스 이용인원							상담등록인원		
	초기대응(비대면)			대면서비스			합계			
	헬프라인 (전화)	넷라인 (온라인)	소계	지역센터	전문상담기관	소계		지역센터	전문상담기관	합계
2021	553	95	648	526	68	594	1,242	311	42	353
2022	767	103	870	542	48	590	1,460	353	40	393
2023	832	191	1,023	977	93	1,070	2,093	657	92	749
2024	726	183	909	3,050	185	3,235	4,144	1422	142	1,564
2025	665	60	725	4,751	362	5,113	5,838	1,151	345	1,496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에 개정안은 도박문제 예방·치유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재인증, 개선 권고·인증 취소 등 조치를 함께 규정하려는 것으로,

도박문제 예방·치유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전문기관의 확충을 통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민간전문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및 사후관리체계를 통해 도박문제 예방·치유 서비스의 품질 확보 및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기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수행하던 사행산업의 중독 예방·치유 업무를 사행산업의 관리·감독업무와 독립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방치유원의 전신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⁶⁾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였으며, 현행법은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재활사업 지원 등을 예방치유원의 고유 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현행법 제14조제7항⁷⁾은 예방치유원은 필요한 경우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전문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예방치유원과 지역센터의 조직 및 예산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박예방교육 및 치유·상담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둘째, 개정안과 같이 도박문제 예방·치유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인증

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법률 제18773호, 2022.1.18., 일부개정] 개정으로 2022년 7월 19일 기관명칭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변경되었음.

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① ~ ⑥ (생략)

⑦ 예방치유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⑧·⑨ (생략)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도박문제 예방·치유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인증 신청에 관한 규정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⁸⁾.

셋째, 안 제18조의5제1항은 ‘도박문제 예방사업’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박문제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8조의5제2항에 따르면 인증기관은 도박문제 예방사업뿐만 아니라 치유사업도 수행할 것으로 보이므로 ‘도박문제 예방사업’을 ‘도박문제 예방·치유사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도박문제 예방·치유사업 수행기관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다양한 기

8) [유사 입법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전문기관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법인·기관·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법인·기관·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법인·기관·단체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주거지원 사업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인증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관별 서비스 품질 격차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7

※ 참고자료

1.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

1. 개요

- (조사근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제1항제7호,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조사목적) 청소년 도박 실태 파악 및 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
- (조사대상) 전국 초(4~6학년)·중·고등학생 13,481명 * 총 633개교
- (수행기관) (주)케이스탯리서치

2. 주요 결과

- (평생 도박 경험률) '24년 4.3% → '25년 4.0%
 - (최근 6개월 지속 경험률) '24년 19.1% → '25년 19.4%
- (평생 경험 도박 유형) 온라인 카지노게임(35.8%) > 오프라인 복권(31.7%) > 온라인 미니게임(29.8%)
 - (최근 6개월 지속한 도박 유형) 온라인 카지노게임(34.9%) > 온라인 미니게임(26.2%) > 오프라인 복권(24.3%)
- (평생 도박 경험 이유) 재미있을 것 같아서(58.5%) > 친구와 같이 놀기 위해서(32.5%) > 친구/선후배가 추천해서(21.7%)
- (타인명의 사용률) '24년 48.4% → '25년 35.1%
- (대리배팅 이용률) '24년 24.4% → '25년 24.3%
- (도박권유 추천 경험) '24년 19.0% → '25년 15.4%
- (주변 친구 도박 목격/청취 경험률) '24년 27.3% → '25년 27.3%
- (평생 도박문제 예방교육 경험률) '24년 82.4% → '25년 82.8%

- ☞ 평생 도박 경험률은 전년대비 0.3% 감소한 반면, 지속률은 0.3% 증가
- ☞ 온라인 카지노 게임, 온라인 미니게임 등 청소년이 경험한 도박 유형 중 온라인 도박 비중 높음
- ☞ 도박의 초기 목적은 '재미'와 '놀이' 등 금전적 이유보다 관계·흥미 요인이 주요 동기로 작용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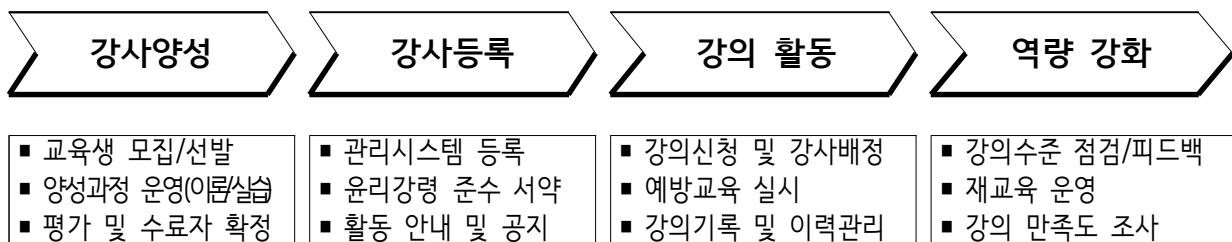
2. 도박문제 예방강사 운영 체계 및 현황

□ 예방강사 운영 개요

○ 예방강사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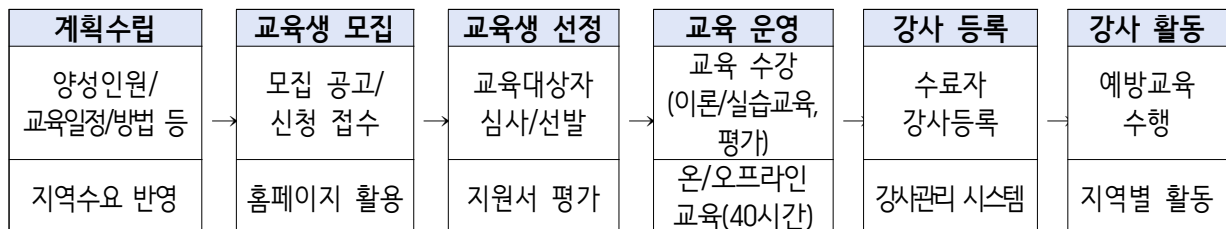
- 맞춤형 예방교육 수행: 교육 수요처(학교, 일반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대상별 특성에 맞춘 현장교육 실시
- 고위험군 조기개입: 단순 예방을 넘어, 고위험군 대상으로 조기개입 프로그램 운영(단, 프로그램 워크숍 이수자에 한함)

○ 예방강사 운영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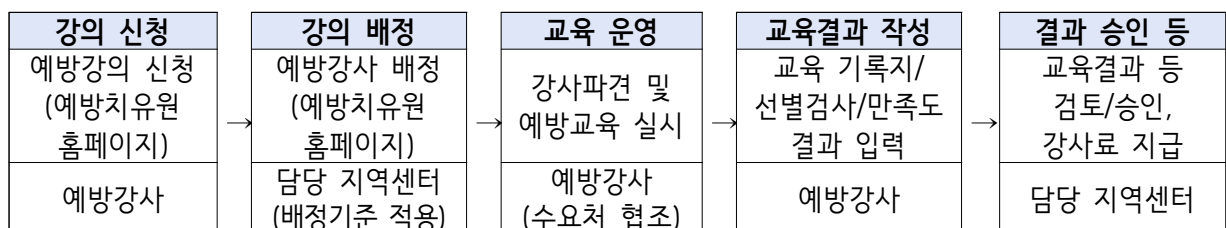


□ 예방강사 운영 세부절차

○ 양성 절차



○ 활동 절차



○ 역량강화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재교육 운영	교육내용 최신화 등을 통해 연 1회(4시간) 과정 운영	미수강 시 활동 제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워크숍 운영	고위험군 대응인력 확보를 위해 연 1회 워크숍 운영	예방강사 선발·운영
강의수준 현장 점검	예방강사 강의점검/피드백을 통한 강의수준 제고	지역센터/본부 점검

□ 예방강사 운영 현황

○ 예방강사 양성 현황(2013 ~ 현재)

- '13년 제도 도입 이후, 정기적으로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총 930명의 예방강사 양성(연평균 약 85명 양성, 미 실시 연도 제외)

<'13년~'25년 예방강사 양성 현황>

(단위 : 명)

연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합계
인원	58	-	28	124	124	122	143	106	-	26	55	67	77	930

○ 예방강사 활용현황('25년말 기준)

- 자격유지 등록 예방강사는 561명, 활용 가능한 예방강사는 528명
 - 강사활용 제외: 활동 유예 신청자 및 당해 연도 재교육 미이수자
 - 강사자격 취소: 미활동 강사 또는 2년 연속 재교육 미이수자
- 활용 가능 강사 528명 중 실제 활동한 강사는 470명
 - 지역별 등록강사 수는 최대 71명에서 최소 24명이며, 지역별 강사 활용도는 최대 100%에서 최소 78.6%임

<2025년 지역별 등록/활동강사 현황>

지 역	등록 강사 (A)	활용가능강사 (B)	활동강사 (D)	활용비율[%] (E=D/B)
서울	71	67	54	80.6
부산울산	66	62	58	93.6
대구	36	33	29	87.9
인천	24	23	21	91.3
광주전남	49	46	41	89.1
대전충남	29	28	22	78.6
세종충북	48	48	39	81.3
경기북부	28	24	23	95.8
경기남부	47	45	41	91.1
강원	42	38	38	100
전북	33	31	27	87.1
경북	32	30	26	86.7
경남	31	29	27	93.1
제주	25	24	24	100
합계/평균	561	528	470	89.0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